

## 2024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의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우수한 콘텐츠 발굴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4년 인천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3월 26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 1 사업개요

#### □ 공고개요

- 공고목적 : 창업초기 이후 성장단계기업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인천 핵심 문화콘텐츠 발굴 및 인천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확보
- 공 고 명 : 2024년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명 :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지원)
- 공고기간 : 2024. 3. ~ 2024. 12.
- 주요내용
  - 지원규모 : 360,000,000원(시비 360,000,000원), 총 6개 과제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4. 11.
  - 지원대상 :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기업
  -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구분	내용	지원규모	
자유 공모	문화콘텐츠* 분야 콘텐츠 제작지원 *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 콘텐츠 제작지원 (지원제외 분야 : 영화, 단순 공연, 출판)	과제별 60 백만원 내외	3개 과제 내외
	지정 공모		수요기관 실증 연계 콘텐츠 제작지원 * 수요기관 지정 콘텐츠 실증 연계 가능한 콘텐츠 제작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1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없음(주관기관 단독 지원)

### 2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기업(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창업 3년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5억 이상인 콘텐츠 기업(법인 or 개인사업자)
  - 인천 외 기업 지원 가능(단, 사업기간 내 본사 또는 지사에 인천 설립)
- ※ 지사 : 본사 조직에서 분산된 지역 단위를 대표(사업자등록증 표기)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지원대상 (자격요건 기준 확인 필수)
  - 업력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설립일자로부터 3년 이상인 기업  
(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일자를 창업일로 봄)
  - 매출기준 :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기준 평균  
(`23년 재무제표 또는 (결산년도 미도래 시) `22년 재무제표에서 3년)
  - 전입조건 : 인천 지역 외 기업은 사업 선정 후 협약기간 이내 인천으로 본사 또는 지사 이전 필수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시행 등의 조치가 있음)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지원자격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이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또는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기업이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한 경우
- 신청기업이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 지원분야

### ① 자유공모 : 콘텐츠 전장르 제작지원

- 지원규모 : 과제당 60백만원, 3개 과제 내외
-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 (※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단순 공연 제외)

#### <참고>

- \* **지식정보** : e-learning, 가상세계/가상현실,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 플랫폼 등
- \* **콘텐츠솔루션** : 콘텐츠보호, 모바일솔루션, 과금/결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컴퓨터그래픽(CG) 등



### ② 지정공모 : 수요기관 실증 연계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 과제당 60백만원, 3개 과제 내외
- 사전에 공지한 수요기관별 지정과제 중 선택하여 과제 공모
- ※ 지정공모 신청 시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필수

#### <참고>

- \* **수요기관 실증 연계** : 지원하는 문화콘텐츠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사·군·구,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콘텐츠 제작주요와 기술력 있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연계
- 수요기관 실증 연계 지정과제

번호	실증 콘텐츠	수요기관
1	축제 All in One 패키지 “Ai O” 체계 개발	연수구청
2	안골 창작플랫폼에 반응형 영상 및 인터랙션 콘텐츠 구축	연수구청
3	제물포리네스명사회를 위한 야생화 행사 연계 인형 특호형 드론 라이트쇼 개최	인천관광공사
4	인천 관광산업 특화 융복합 인재양성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인천관광공사
5	소래역사관 실감미디어 전시	소래역사관
6	소래습지 일원 미디어(AR기반 등) 시스템 구축	인천광역시
7	인천아트플랫폼 중앙로 현실증강 야간경관 구축	인천광역시
8	재외동포웰컴센터 개소에 따른 역사 콘텐츠 제작	인천광역시
9	인천크래프트 IP를 활용한 마인크래프트 콘텐츠 제작	인천광역시
10	인천히어로즈 3D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인천광역시

11	VR 기반 공동주택 화재 피난교육 콘텐츠	인천소방본부
12	자원순환시설 이해도 향상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 시설체험	인천환경공단
13	키자니아 캐릭터 IP를 활용한 솜뿔 체험 영상 제작 프로그램 개발	엠비씨플레이비
14	키자니아 캐릭터 IP를 사용한 어린이용 키자니아 포토부스 개발	엠비씨플레이비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 □ 지원조건

### ○ 세부요건

구분	세부내용
지원 조건	<b>일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하는 <b>콘텐츠 제작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b>을 지원함</li> <li>※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원의 인건비,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외주용역비 등</li> </ul>
	<b>내부인력 인건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사업비 내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li> <li>※ 제작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직접고용인력(신입/경력, 프로젝트 참여기간)에 한해 참여 비율로 편성 가능</li> <li>※ <b>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50%, 월 지급액 300만원 이하로 제한</b></li> <li>※ 개인사업자이면서 1인 기업(직원 없이 대표자 1인만 근무)인 경우,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참여율 최대 100%까지 인정하며 인천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여 산정(근로내역서, 급여대장 등 증빙자료 필수)</li> <li>※ 타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청년채용,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수혜 중인 인력의 경우, 참여인력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세부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를 0원으로 작성하여야 함(인건비를 중복으로 계산할 수 없음 / 비교 칸에 인건비 수혜사업명 작성 필수)</li> <li>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및 법정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근로시간 준수 적용</li> <li>※ 최저임금 준수 가이드 : 임금(급여) 지급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총 임금(급여)을 근로시간을 나누었을 때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2024년 기준 9,860원/시간당) 이상이어야 함</li> </ul>
	<b>인권보호 안전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 제작 시 ① 인권 보호, ② 외국인 차별 금지, ③ 장애인 인격가치 훼손 금지 관련 가이드 준수</li> <li>참여인력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제작에 따른 국내외 출장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li> <li>※ 항공·수상·추격·폭발 장면 및 오지 촬영 등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 및 제작 진행시에 한하여 상해 및 여행자 보험료 사업비 편성 가능</li> </ul>
	<b>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b>콘텐츠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b></li> <li>※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환수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함)</li> <li>협약종료 전까지 완성된 콘텐츠에 대하여 국내외 방송·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방영, 해외진출 등 <b>사업화 관리계획 또는 성과(시청률, 조회 수, 계약체결, 매출액, 구독자수 등)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b></li> </ul>
가점 사항	<b>우대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1점)</li> <li>※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인 경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93, 부평테크시티 9-10층)</li> </ul>

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70% 지급</li> <li>2차 지원금 : 중간평가 시 “계속 지원”으로 평가될 경우 30% 지급</li> <li>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사항</li> </ul>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전액(100%)	협약기간+6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b>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b></li> <li>※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타 서류로 대체 불가함</li> </ul>			
지원금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집행</b></li> <li>※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집행된 부가가치세는 환수대상임</li> <li>•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해당분만 인정됨</li> <li>※ 협약 전 집행금액 소급 및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금액은 인정되지 않음</li> <li>•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의해 <b>부적절 집행</b>으로 확인될 시 <b>집행여부와 관계 없이 환수</b>될 수 있음</li> <li>• 모든 사업비는 <b>사업비 산정기준(별첨)</b>에 따라 적절한 증빙자료를 갖춰 집행해야 함</li> </ul>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1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총사업비	신청 지원금	기업 자부담(현금) 비율
지원금 + 자부담 = 100%	총 사업비의 9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산정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 부담

○ 지원규모 : 6개 과제, 과제 당 60백만원 내외

지원분야	지원과제	총지원금	
		기본 지원금	
자유/지정 공모	6개	360백만원	
		과제당 평균 60백만원 내외	

○ 의무이행활동

구분	세부내용	비고
교육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성희롱 예방교육 필수이수</b></li> <li>※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li> </ul>	참여인력 전원
프로그램 참여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1회 이상
성과공유회 참석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최 성과공유회 참석(11~12월)	1인 이상
지원고지	• 지원과제의 최종산출물 내 지원문구 명시 필수	결과물 내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li> <li>※ 사업수행 관련 자료,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정보공시 등</li> </ul>	요청 시

### 3 평가방법

#### □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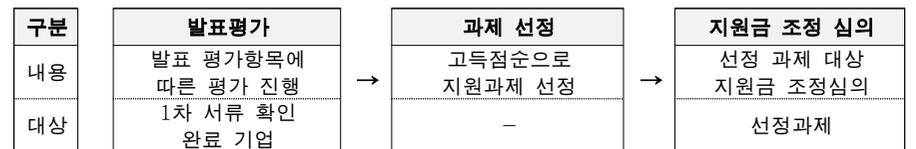
구분	평가방법	내용
1차	서류확인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 여부 검토 (필수서류 미제출시 "부적격")
2차	발표평가	평가항목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

※ 단, 1차 서류확인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이 지원과제 수의 3배를 초과할 경우** 2차 발표평가가 이전 **별도의 서면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음

#### □ 선정기준

- 평가는 관련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평가위원 예비명부(3배수) 추천순위에 따라 섭외 및 구성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적격’으로 간주하며, 적격 해당 시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지원과제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방법에 따라 순위 선정
  - ① 최고·최저점을 포함하여 평가점수 총점이 높은 과제
  - ② 고배점 평가항목의 총점이 높은 과제
- 발표평가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기업이 제안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감액 조정을 진행
- 선정 후 선정 대상과제의 타 지원사업 중복지원, 중도포기 등을 대비해 ‘적격’ 대상 과제에 한해 순위에 따른 예비선정 과제 지정
  - 예비과제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함
- 통보방법
  - 발표대상 : 적격검토 후 개별 통보
  - 최종선정 :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 안내

#### □ 발표평가 심사절차



## □ 발표 평가항목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신청기업 (32)	추진의지	• 기업 및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 각오	32
	기업전문성	• 유사과제 수행경험 및 시장 성공 경험 여부	
	참여인력	• 참여인력 확보 여부(정규/비정규/용역) 및 전문성	
	재무건전성	• 기업 재무흐름 및 건전성 • 기업신용데이터 정보조회	
과제내용 (35)	과제 이해도	• 사업 이해도 및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35
	기획 독창성	• 과제내용의 차별성 또는 참신성	
	기획 완성도	• 콘텐츠 제작기획의 구체성, 현실성 여부	
사업예산 (10)	예산적정성	• 총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10
		• 사업비 편성내역의 사업 목적 부합 여부	
기대성과 (20)	발전가능성	•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20
	콘텐츠 경쟁력	• 향후 사업화, 마케팅 계획 등 경쟁력 여부	
일자리 창출(3)	신규인력채용	• 신규인력채용 여부	3
		- 신규고용 1인 당 1점, 최대 3점	
가점(1)	입주기업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1
합계			100(101)

※ 신청기업의 <기업신용정보>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조회하여, 평가자료에 반영예정

## □ 지원금 조정심의

- 신청기업 대상으로 사업예산 예산적정성 평가를 통해 지원금 소요 적정성 평가
- 지원예산 적정성 평가기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사업예산	예산적정성	• 총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10	7.5 이상	7.5 미만 4.5 이상	4.5 미만
		• 사업비 편성내역의 사업 목적 부합 여부				

- 적정성 등급 및 감액규모

A등급	B등급	C등급
감액없음	신청금액의 5% 감액	신청금액의 10% 감액

※ 지원금 조정심의 결과에 따라 감액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 4 추진절차

###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비즈오케이시스템(bizok.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선정평가	• 선정평가에 따른 지원과제 선정 및 예산조정
↓	
협약체결	• 협약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기업부담금 입금
↓	
1차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 지급, 기업별 과제 수행(필요 시 과제 현장점검 실시)
↓	
중간평가	• 중간평가 실시(8월)
↓	
2차 지원금 지급	• 평가 결과 '계속' 지원 시 2차 지원금 지급
↓	
최종평가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정산

### □ 지원사업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기간	추진일정(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정과제 공개, 모집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콘텐츠 제작													
중간평가 및 2차 지원금 지급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과제 선정 추진일정

구분	기한
신청 접수마감	4월 16일(화) 18:00까지
서류 적격여부 결과발표 (서류/발표 평가여부 안내, 발표자료 제출 대상자 안내)	접수일로부터 3일 후 예정 * 평가일 및 발표자료 안내 예정
서류 혹은 발표평가	4월 4주차 예정
서류 혹은 발표평가 결과 발표	4월 말 발표 예정

※ 2차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모두 발표자료 제출

※ 상기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 5 접수방법

###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 4. 16.(화) 18:00까지
- 제출서류 : 붙임 및 별첨 신청양식 참조
- 제출방법 : 비즈오케이(Biz-ok) 접수

### □ 제출안내

- 본 공고의 사업 신청안내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 통해 접수

- 접수는 '비즈오케이(Biz-OK)'를 가입하시어 이용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즈오케이 시스템 이외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며 반드시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접수기한 종료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며 마감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비즈오케이 내 첨부파일 업로드 시, 신청서류 내역별 폴더를 생성하고 각 폴더 내 파일을 수록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 후 업로드

- '(분야)과제명'폴더 > 제출 서류별 폴더 > 파일수록 (기업명.zip)

#### [서류 제출 파일리스트 예시]

이름	수령한 날짜	유형
1. 사업신청서	2022-02-18 오후 3:55	파일 불러
2. 사업수행계획서	2022-02-18 오후 3:55	파일 불러
3. 참여인력 총괄표	2022-02-18 오후 3:55	파일 불러
4. 참여인력 이력사항	2022-02-18 오후 3:55	파일 불러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022-02-18 오후 3:56	파일 불러
6.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2022-02-18 오후 3:56	파일 불러
7.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2022-02-18 오후 3:57	파일 불러
8. 사업자등록증	2022-02-18 오후 3:57	파일 불러
9. 법인등기부등본	2022-02-18 오후 3:57	파일 불러
10. 2021년 재무제표	2022-02-18 오후 3:58	파일 불러
11. 국제/지방세 완납증명서	2022-02-18 오후 3:58	파일 불러
12.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2022-02-18 오후 3:58	파일 불러

#### ■ 제출 파일(예)

이름
(용접콘텐츠)기업명_사업신청서.hwp
(용접콘텐츠)기업명_사업신청서.pdf

## 6 제출서류

### □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전체 압축하여 비즈오케이 시스템 업로드 제출

NO	신청서류 내역	양식	신청 기업	제출형식
1	사업신청서 *인감 날인 후 제출	[서식1]	○	• HWP(원본)각 1식 • PDF(날인본)각 1식
2	사업수행계획서	[서식2]	○	
3	참여인력 총괄표	[서식3]	○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4]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참여자 전원 서명 후 제출	[서식5]	○	
6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날인 후 제출	[서식6]	○	
7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인감 날인 후 제출	[서식7]	○	• 이미지파일 각 1식 (PDF, JPG 등)
8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해당함)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10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2021~2023년 재무제표) * 단, 결산년도 미도래 시 2020~2022년 재무제표	-	○	
11	국제/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까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	
12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13	신규채용 협약서(해당시)	[서식8]	○	
14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등록증(해당시) * 법인전환기업 해당 시(창업일자 확인용)	-	○	
15	1인 기업 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시) * 인감 날인 후 제출	[서식9]	○	
16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수요기관 날인 후 제출	[서식10]	○	
17	신청기업정보	[서식11]	○	

### □ 발표자료 제출

- 발표자료는 1차 서류검토 합격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 접수 예정
- 1차 서류검토 합격 과제는 2차 평가 서류 혹은 발표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발표자료 제출  
(※ 서류검토 합격 과제 수가 지원과제의 3배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서면평가 진행)
- 1차 서류검토 적격 발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후(예정)
- 발표자료 제출기한 : 발표평가 전일 까지(별도 공지)

### □ 일반사항

- 제출된 신청서 및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함, 사업담당자에게 접수 청탁연락 금지
-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안내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진행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을 준용함

### □ 사업의 선정 및 취소

- 공정한 기준을 통해 평가를 이행하여 지원기업을 선정함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의심하는 항의행위 금지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지원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선정 및 수행 시 서류 허위제출 및 참가기준 부적격 등의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ITP)은 즉시 지원중단,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선정 제외기준
  - 제출서류 목록 중 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 ※ 서류 내 기재된 내용의 공신력 및 효력이 없으므로 미제출로 간주
  -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할 경우
  -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참가기준 자격검증 서류의 내용 상 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성과관리

- 본 사업의 결과물은 전담기관(ITP)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성과물로 활용·전시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향후 3년 간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

첨부 2024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신청서식

참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별첨 2024 인천 문화 콘텐츠 제작 수요 예비리스트 공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10., 2011. 5. 25., 2014. 1. 28., 2016. 3. 29., 2020. 2. 11., 2020. 12. 8., 2022. 5.3., 2023. 8. 8.>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